靑, 세월호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 조직적 방해

반대 세력 가담 막고 언론활동 방해 공작 정황도

이재정 의원 '비서실장 지시 靑 캐비닛 문건' 공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총력전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입수·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인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장 지시사항 및 대책문건'에 따르면 2015년 8월 5일 비서실장 지시사항에 "8월 10일부터 본격 시작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과 관련, 세월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세도 위축됐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 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이병기씨가 2015년 3월부터 청와대 수석 등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당시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일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건에는 특히 이헌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부임과 관련, 협의·협조적 관계를 유지한 뒤 '세월호 사고 당일 VIP(박근혜) 행적' 조사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도 적혀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까지도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이번 문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실제 2015년 10월 3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VIP행적'을 조사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논의절차도 문제가 큰 만큼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 여당 추천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 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게재돼 있다.

앞서 2015년 7월 1일 비서실장 지시사항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념 편향성 인사들의 신청이 많다. 향후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북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원 조회과정에서 이들을 잘 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언론활동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려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2015년 3월27일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4월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출입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이상한 기사나 추측성 기사 등을 쓸 가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재차 보안을 당부하는 지시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 밖에도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저지 등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 등도 있다.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사실상 국민보다 대통령을 우선시했음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면서"문건에서 나타난 대부분 사안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적폐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9	달뜸	21:54
해짐	17:43	달짐	23:24

나들이 가기 좋은 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0/22	보 성	맑음	7/20
목 포	맑음	11/21	순 천	맑음	11/22
여 수	맑음	14/21	영 광	맑음	18/21
나 주	맑음	7/22	진 도	맑음	10/20
완 도	맑음	12/22	전 주	맑음	10/21
구 례	맑음	7/21	군 산	맑음	10/21
강 진	맑음	8/23	남 원	맑음	7/21
해 남	맑음	7/22	흑산도	맑음	13/18
장 성	맑음	8/2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2.0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18	06:09
	--:--	18:50
여수	06:35	00:37
	20:19	13:31

◇ **생활지수**

산불위험	낮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한때나쁨

◇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31(화)	11/1(수)	2(목)	3(금)
14/23	12/19	5/16	4/18	7/19	9/19	10/19

"기관실로 유골 유실 가능 세월호 수색 연장해야"

이달 말 세월호 선체 수색 종료〈**광주일보 10월 26일자 7면**〉를 앞두고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한 추가 수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2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뻘이 가득 찬 기관 구역을 제외하고 수색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며 추가 수색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객실과 화물칸을 끝으로 오는 27일 수색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그러나 최하층인 기관실로 통하는 문이 모두 개방돼 있었고 이곳에서 인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해수부는 애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엔진룸, 타기실 등 기관 구역 전체에 대한 수습계획을 마련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 했던 곳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앞서 수습본부에 기관부 구역에 대한 추가 수색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선조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선체 직립' 과정을 거쳐 내부를 조사할 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게 되면 그동안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공간들에 대한 재조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영기자 young@

적십자사 회원들 김장담그기 봉사 광주·전남적십자사 회원들이 26일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봉사센터에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장은 지역 소외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연녀 5살 아동 폭행·실명시킨 20대 '살인 고의' 쟁점

광주고법서 항소심 첫 재판

내연녀의 5살 아동을 상습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남성〈**광주일보 7월18일자 6면**〉이 살인 고의까지 있었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와 내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이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하면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을 했다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부 피해는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아들을 폭행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8년, 최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살인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 일부 무죄 판단 잘못 … 재판 다시하라"

대법… 피고인 형량 높아질 듯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마을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으며,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